

Social Welfare Reform – 사회복지법의 개정과 개인의 안녕에 대하여

뉴질랜드 정부는 기존의 복지수당지급과 관련하여 2012년부터 점차적으로 복지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2013년 7월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복지개정의 근거는 국민당에서 내세운 복지 개혁 정책 (Welfare Reform)의 에서 비롯되었다.

"Too many New Zealanders are welfare-dependent. It's trapping families in poverty and it's costing too much. We believe those who can work, should work."
[\(http://www.national.org.nz/Budget2012/Budget_WelfareReform_Finalweb.pdf\)](http://www.national.org.nz/Budget2012/Budget_WelfareReform_Finalweb.pdf)

“너무 많은 뉴질랜드 인들이 복지에 의존해 왔다. 이러한 결과로 가족들은 가난을 대물림하고,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가중되었다. 국민당은 일할수 있는 사람은 일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한국교민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있다. 최근에 아시안 커뮤니티 서비스 트러스트를 방문한 두 가족의 예를 보아도, 복지개혁이 이민자들에게는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부담과 더불어 정신적인 압박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수당을 받기전에 해야 할일이라는 안내에 따르면, 구직을 준비하는 훈련 (workshop) 참석과 더불어 이력서와같은 구직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례 1)

철수씨는 55세된 가장으로 자녀들은 타지로 나가있고, 현재 부인과 함께 렌트집에서 생활해왔다. 그동안은 한국식품점안에 서브리스로 얻은 작은 점방에서 그럭저럭 두내외가 먹고 살만큼만 벌면서 살아왔는데, 갑작스런 철수씨의 건강 악화로 그나마 유지하는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다. 이민온지 10년차라지만, 소규모 영세업으로 근근 살아가면서, 자녀교육비에, 렌트비에, 모아놓은 돈이라곤 가게 정리하고 받은 얼마가 전부인지라 걱정이 태산이었다. 그나마 한달정도 놀면서 꼬치감 빼먹듯이 통장에서 빠져나간 액수에 놀라 걱정을 하던 차에 주변에서 알려준 복지기관에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지난주부터 철수씨의 부인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파트 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하였지만, 부인의 주급으로는 렌트비만 간신히 낼 수 있는 정도여서, 철수씨의 계획은 웍앤인컴에 의뢰하여 질병수당이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한 것이었는데, 2013년 7월부터 시행해온 새복지법에 의하면, 기존의 질병수당, 실업수당은 없어지고, 고용 서포트 (Jobseeker Support) 를 위한 보조가 새로운 수당이 된 것이다.

워크앤인컴의 웹사이트 상에서 보면, “고용서포트는 일반적으로 풀 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혜택이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 건강상태가 안좋거나, 부상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 구직자에 대한 지원은 풀타임 직업을 찾았거나, 찾을 동안 받게되는 보조이다.” “Jobseeker Support is the benefit for people who can usually work full-time. Some people can't look for work at the moment, for example because they have a health condition, injury or disability. If you don't currently have to look or prepare for full-time work, this will continue until your situation changes.” <http://www.workandincome.govt.nz/individuals/brochures/moving-to-job-seeker-support-what-you-need-to-know.html>

고용서포트는 기존의 수당혜택자종 실업수당, 질병수당, Domestic Purpose Benefit 그리고 과부수당등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철수씨는 질병수당이 아닌 구직자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수당을 받기위해 고용관련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해야 했고, 적합한 직업을 구하는데 필요한 이력서를 비롯한 직장을 찾기위해 노력한다는 증거를 보여야 했다. 또한 잠정적으로 건강상태로 인해 일을 구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후 일정한 액수의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사례 2)

영이엄마는 남편의 사망후에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과부수당을 받아왔다. 최근에 바뀐 복지법으로 일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스트레스가 되어 아시안 커뮤니티 서비스 트러스트를 찾게 되었다. 다행히 수당에 관한 조치는 영이가 도와주어서 아무 무리없이 기존에 받던 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구직을 준비하라는 웍앤인컴 담당자의 권고는 영이엄마의 근심을 부축이고, 심지어 가슴이 두근거리고, 쉽게 잠들 수 없는 불안감에 빠져들게 되었다. 영이엄마 입장에서는 이민온지 15년이지만 영어와는 담을 쌓고 살아왔었고, 어려운점들은 이웃이나 자식들이 알아서 보살펴왔었는데 이제와서 취직을 해야 한다니 막연한 따름인 것이다. 영이엄마는 상담후에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